

# 한국은행 부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안)

## 2023. 3.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해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이하 “**부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범위)** 부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으로 한정한다.

1. 부산광역시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만기 1년이내의 운전자금 대출실적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만기 1년이내의 운전자금 대출실적

**제3조(지원자금의 구분)** 부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전략지원부문, 특별지원부문 및 일반지원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부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하며, 지원대상업체의 세부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벤처기업
2. 혁신기업
3. 녹색기업
4.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5.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6. 전입기업
7. 수출관련기업
8.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9.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10. 명절·재해 자금 등
11. 기타 지원기업
12.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3. 다른 규정 등에 의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이차보전 대출 포함)
5.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금
6.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금
7. 부동산업, 유흥업 등 <별표 2>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

③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이내로 하며, 기간 만료 후에도 제1항의 세부 인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전략지원부문)** ① 제4조제1항제5호(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제9호(농림수산업 관련기업)의 지원대상업체 중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격 대출실적을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② 본부장은 전체 한도 중 특별지원부문 한도를 제외한 한도의 일부를 지역별 경제사정,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전략지원부문에 대한 자금배정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2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4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특별지원부문)** ① 제4조제1항제12호(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의 지원대상업체 중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격 대출실적을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본부장은 특별지원부문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계획을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로 한정한다.

③ 특별지원부문에 대한 자금배정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1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일반지원부문)** ①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적격 대출실적과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의한 대출실적을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② **전체 한도 중** 제5조에 따른 전략지원부문 및 제6조에 따른 특별지원부문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일반지원부문에 배정한다.

③ 일반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례 배정하되 업체당 7.5억원(금융기관 대출 취급 기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6조제4항**은 일반지원부문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제8조(지원일몰제도)** ① 특정 업체에 대한 대출실적의 누적인정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이후 대출실적은 2년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업체로 인한 한국은행 대출금액의 연환산 월평균 누적액(해당기간 동안 월별 인정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대출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출실적은 2007년 1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인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대출실적을 재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재개시점부터 새롭게 계산한다. 다만, 인정되지 않는 기간동안 대출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동 실적을 재개시점 이후의 실적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출실적(명절자금 수혜업체는 제외)에 대해서는 그 실적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기타)** 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10호(명절·재해 자금 등) 및 제11호(기타 지원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부문간 조정)** ① 제5조제2항의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5조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을 때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지원부문에 비례 배정하며, **이 경우 제6조제4항의 신용등급 제한을 적용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5조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대출 취급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부문 한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부문으로 배정할 수 없을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지원부문에 비례 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6조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대출 취급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할 수 있다.

④ 제13조의 **제재 등으로 회수된 한도는 제재를 받지 않은** 여타 금융기관에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배정액의 금융기관별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대출의 만기도래, 중도상환, 원 차주의 폐업 또는 최종부도거래치 지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0일까지 한국은행 부산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대출 취급실적 요약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3.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대출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4.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대출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5.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 **본부장은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보고서 및 자료의 제출이 누락·지연될 경우 해당 대출실적을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의 회수 및 배정)** 본부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1조제1항의 보고서 및 자료에 의해 산정한 당월중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점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

**제13조(제재)** 본부장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회수
2.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5배 이내에서 위규사유별로 배정한도를 감축

위규 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 <sup>1)</sup>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증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sup>2)</sup>
기타 최종 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지원부문 등의 주요내용이 상이한 대출	2.0배 이내
기타 제4조 등에 의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로 확인된 대출	

주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2)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월로부터 지연(또는 소급)신고월까지는 1배수 차감

**제14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9. 12. 20.>

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2020년 3월 한도배정 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9. 1.>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2021년 11월 한도배정 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12. 15.>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2022년 3월 한도배정 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2. 4. 15.>

이 기준은 2022년 5월 1일(2022년 7월 한도배정 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3. 3. 29.>

이 기준은 2023년 4월 1일(2023년 6월 한도배정 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실적 인정기준

전산 코드	구분	인정 기준 <sup>1)</sup>
A2	벤처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해당업체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A3	혁신 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조업 영위기업으로서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마크 획득업체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A4	녹색 기업	- 아래의 해당 업종중 제조업(KSIC 10-33) 및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KSIC 36-38)을 영위하는 기업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기업 ○ 「지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인증)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A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부산광역시 소재)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운수 및 창고업(KSIC 49-52) (단,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육상 여객 운송업(KSIC 492), 외항 및 내항 여객운송업(KSIC 50111, 50121), 주차장 운영업(KSIC 52915)은 제외)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부산광역시 소재)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KSIC26429) ○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KSIC27211) ○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KSIC27216) ○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KSIC28119) ○ 축전지 제조업(KSIC28202) ○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KSIC29142)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KSIC 30)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KSIC 311) ○ 도로화물 운송업(KSIC 493) ○ 해상운송업(KSIC 501) (단, 외항 및 내항 여객운송업(KSIC 50111, 50121)은 제외) ○ 화물취급업(KSIC 5294) ○ 정보통신업(KSIC 58~63)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KSIC 70-73) - 「부산테크노파크」가 발급한 확인서류 제출기업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발급한 확인서류 제출기업 - <별첨 1>의 '부산시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부산시 소재 기업

전산 코드	구분	인정 기준 <sup>1)</sup>
A9	전입기업	- 타 지역으로부터 부산광역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A10	수출관련 기업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A11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4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인증 마크를 획득한 기업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농어업법인
A14	명절·재해 자금 등	- 명절,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A15	기타 지원기업	-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해, 거래업체 부도, 경영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등 본부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부산광역시로부터 「7대 전략산업별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명예선도기업 포함) - 「부산 서비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가 인증한 예비사회적기업(비영리 법인·단체는 제외)
A16	경기부진·경기민감 업종 영위기업 (부산광역시 소재)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sup>2)</sup> ○ 해상운송업(KSIC 501-502) (단,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A8)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음식·숙박업(KSIC 55-56) ○ 도소매업(KSIC 45-47) ○ 여행업(KSIC 752) ○ 운수업(KSIC 49, 51-52) (단, 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A8)에 해당하는 업종(KSIC493, 5294)은 제외) ○ 여가업(KSIC 90-91)

주 :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2)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함

<별표 2>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제10차) <sup>1)</sup>
주류, 담배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주점업 <sup>2)</sup>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금융관련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보건업	861 병원 862 의원
도박장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91291 무도장운영업
미용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안마업	96122 마사지업

주 1) 배정제외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소분류로 표기된 경우 하위 분류에 해당하는 세세분류 영위 업종은 모두 배정제외업종에 해당  
2) 상호명에 '포차', '호프', '맥주', '비어', '바' 등 주류명이 포함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